

국제제 밤박물관 과학원 혁신원 이의회 회의 제제 전통적 전통적 어려움 유통 리리 유효 강장

仁仁

淑淑

前言

* 서울대 博物館 學藝研究室

¹⁵ 李信淵, 博物館學敎研究博士과 주제 비물과학 워크샵 학설기, 박물관 신문 195 호, 1987年 11月

1) 在仁淑, 「歐美對韓戰的反應」, 《中研院民族學研究所集刊》, 1985年, 1987年2月。

2) Museum 參觀地點: Smithsonian Institution on D Street at A Avenue, Washington, D.C. 20537 American Association of

2) *Museum Ethics* by the Committee on Ethics of AAM,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¹Al Museum at 1973, Ulmberg, [A Proposed Curatorial Code of Ethics], *Museum News*, 52, no. 8 (May 1973).

¹⁴ Alan and Barbara Ulberg, 「A Proposed Curatorial Code of Ethics」, *Museum News* 52, no. 8.(May 1974), pp.1-2; Barbara Ulberg, 「A Proposed Curatorial Code of Ethics」, *Museum News* 52, no. 8.(May 1974), pp.18-22.

ICOM 전문적 윤리 요강

I. 序 文

ICOM 전문적 윤리요강은 1986년 11월 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렸던 제 15차 ICOM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윤리요강은 전문직원의 윤리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박물관 전문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특별한 국가적인 혹은 전문적인 요청과 ICOM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더욱 강화되고 발전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의 발전적 수정안은 그 사본을 ICOM의 총무(Maison de l'unesco,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에게 보내야 한다.

이 요강은 ICOM 규약의 제5조와 제16조 C항에 제시된, 전문적 윤리에 관하여 규정된 세부적인 해석사항이라고 하겠다.

(1장) 정의

1장 1조 국제 박물관 협의회(ICOM)

ICOM은 그 규약 제6조에서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직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비정부 전문기구이며, 이러한 자격으로 본 협회는 Unesco, ICOMO, 국제문화재 보존연구소 및 각 국가, 지역, 국제, 국내, 정부, 비정부기구 등의 박물관기구에 대한 책임자들과 다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자문관계를 유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ICOM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박물관과 박물관 기관을 정의하고, 지원하고, 박물관직을 설립, 지원, 보강한다.
- (b) 박물관 사이와 박물관 직원들 사이의 협력 및 상호협조 관계를 수립한다.
- (c) 각자의 공동체 내에서와 세계 인민들 사이에 보다 큰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적이 수행하는 역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장 2조 박물관

박물관은, ICOM 규약 제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영리 목적으로 세워진 항구 단체이며, 연구, 교육, 그리고 흥미를 위하여 인간과 그 환경에 대한 물질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및 전시하여 사회일반에 공개하고 사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이다.

이러한 ICOM이 인정한 박물관의 정의에 더하여, ICOM은 다음의 정의를 규약 제4조에서 더 포함시키고 있다.

- (a) 항구기관으로서의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와 같이 보존과 전시를 하는 기관
- (b) 자연사, 고고학, 인류민속학상의 유물과 유적, 역사기념물, 또는 유적으로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는 수집, 보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c)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동식물 사육장 등과 같은 생존하는 표본을 진열 전시하는 기관
- (d) 자연보호지역
- (e) 과학관, 천문관 등

1장 3조 박물관 전문직

ICOM 규약 제 5조에서 박물관 전문직을 기술 또는 학술상의 특수한 수련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실제경험을 가지고 전문직의 기본 윤리요강을 준수하는 사람들로서 위의 제 1장 1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는 박물관과 박물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1장 4조 행정기구

정책, 재정, 행정 등에 있어서 박물관의 운영과 행정은 국가에 따라, 또 특정한 국가나 기구의 법적인 그리고 지역적 혹은 국가적 제약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다른 박물관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러 국립 박물관의 경우에 있어서, 박물관의 관장, 학예관 혹은 다른 전문적 책임자는 장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해 임명되어 직접적 책임을 가지며 대부분의 지방정부 박물관도 이와 같이 해당 지방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조직되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박물관의 행정과 운영은 운영위원회, 어떤 단체나 비영리기구 혹은 한 개인 등과 같은 어떤 형태의 독립기구에 귀속되어 있기도 한다.

이 규약에서 ‘행정기구’라는 단어는 박물관의 정책, 재정과 행정에 관련된 최고의 기관을 통털어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장관이나 공무원개인, 내각의 주무부처, 지방당국, 운영위원회, 한 단체나 박물관의 관장, 또 다른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다. 박물관의 관장, 학예관 혹은 직업적 책임자는 적절한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다.

II. 기관 윤리

(2장)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2장 1조 박물관의 최소 기준

박물관의 행정기구나 운영당국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가능한 한 박물관의 모든 측면에서 고양시켜야 할 수집업무와 봉사 업무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모든 수집품은 적절하게 보관, 보존되고 문서화되어야 함은 모든 행정기구가 지녀야 할 책임이다.

재정, 재산, 직원, 활동 등은 개개 박물관의 크기와 책임에 따라 다르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이 법이나 행정 법규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달리 ‘박물관의 인가기준’이나 유사한 체계로 최소한의 인준기준과 안내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안내지침이 그 지역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보통 국내, 국제적 담당기구와 전문가들에게서 직접적으로 혹은 ICOM

의 국내위원회나 합당한 국제위원회를 통하여 염을 수 있다.

2장 2조 법 규

개개의 박물관은 박물관, 문화유산,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 관한 해당 국내법과 부합하는, 그 법적 지위와 영구, 비영리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한 명시된 법규나 다른 문서를 갖추어야만 한다. 박물관의 행정기구나 다른 운영부서는 박물관의 목적 및 정책에 대한 그리고 그 행정기구 자체의 역할과 구성을 대한 분명한 진술을 마련하고 공표하여야만 한다.

2장 3조 재 정

행정기구는 박물관과 그 다양한 자산 : 수집품, 관련된 문서, 전물, 시설물, 금융재산, 인력요원 등의, 보호와 육성에 대하여 궁극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 또한 기관의 관련 정책과 목적을 발전시키고 정의하여야 하며 모든 박물관의 자산은 정당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박물관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행정기구가 업무를 수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공이나 사적인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해당 국법과 전문적 회계규정과 부합되는 적절한 회계절차가 채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2장 4조 박물관의 건물 설비

박물관 당국은 수집품에 대한 물리적 안전과 보존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는 특별하고 강력한 의무를 진다. 박물관의 전물과 설비들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박물관의 기본 기능인 수집, 연구, 보관, 보존, 교육, 전시 등의 명시된 정책을 완수하는 박물관으로서 적절하여야만 하고, 대중과 직원들의 안전에 관련하여 적절한 국내 법규를 따라야만 한다. 난중 내내 그리고 밤낮 할 것 없이 철도, 화재, 천재지변, 작품의 파괴, 변질 등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전물과 시설의 운영과 계획에 있어서, 실행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특별 배려도 마련되어야 한다.

2장 5조 요원(要員)

행정기구는 박물관이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숫적으로나 업무의 종류에 있어서나 충분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특정 의무가 있다. 직원의 규모와 그 성격은(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 임시직이거나 영구직이거나 임시직이나 영구직이거나 간에) 박물관의 규모와 그 소장품, 그리고 그 업무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수집품에 대한 관리, 대중과의 관계 및 봉사활동, 연구활동, 그리고 안전관리 등에 관한 박물관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적절한 배려가 취해져야 한다.

행정기구는 특히 박물관의 관장의 임명에 관한 의무를 지며, 관장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조치와 박물관의 정책에 따른 절차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떠한 직원의 교체도 직업적, 윤리적인 도리로 여하한 개인적 혹은 외부적 요인이나 편견보다는 박물관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여하한 경우의 관장이나 직원 임명권을 가진 다른 어떤 고위직 인사에 의한 박물관 직원의 임명, 승진, 해고, 좌천 등에 관해서도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행정기구는 박물관 업무의 다양한 성격과 보존관리원, 복원원, 과학자, 박물관 교육담당자, 유물 관리원, 컴퓨터전문가, 안전관리원 등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공분야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박물관은 필요한 전문인들을 적당한 곳에 기용하고 이러한 전문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전문적 요원으로서 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박물관 전문직의 구성원은 박물관의 활동과 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학문적, 기술적 그리고 직업적인 훈련이 요구되며, 행정기구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훈련된 요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행정기구는 이 윤리요강이나 어떠한 국내법이나 국내 직업윤리 강령의 규정과 위배되는 행동을 박물관원들에게 요구하여서는 결코 안된다.

박물관의 관장이나 다른 전문직 중요요원은 수집품이 위탁된 행정기구에 직접 접하면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2장 6조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과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

박물관은 사회와 그 발전에 봉사하고, 공공에게(예를 들어, 어떤 학술적인 혹은 의학박물관 같은 매우 전문화된 박물관의 경우에는 한정된 대중일 수도 있지만) 공개되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박물관은 박물관이 봉사하고자 하는 특별한 그룹이거나 인구 전체에 쓰여지는 교육적 자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증진시키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는 박물관의 기회과 임무 완수에 합당한 박물관 교육분야의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이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은 박물관이 봉사하고자 목적하는 지역이나 단체, 사회의 모든 계층 내의 더 넓은 새로운 관중을 끌어들일 임무가 있으며, 일반 지역사회와 특별한 개인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박물관에 활발하게 참가하여 그 목표와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2장 7조 대중에의 접근

일반대중(혹은 제한된 대중만을 상대하는 박물관일 경우에는 봉사할 특정한 그룹)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시간에 걸친 전시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은 또한 대중들이 약속이나 다른 절차를 밟아 전문요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야 하며, 아래의 7장 3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안전문제나 기밀보장을 위해 어떤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소장품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장 8조 진열, 전시, 그리고 특별한 업무

박물관 소장품을 포함하여 중요한 유물들을 미래를 위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박물관의 주된 임무에 뒤따라, 연구, 교육활동, 영구전시, 특별전시와 그밖의 특별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보급에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이 박물관의 임무이다. 이들은 박물관의 교육적 목적과 문안으

로 명시된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소장품의 성격이나 적당한 보존관리를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된다. 박물관은 전시물과 진열품에 관한 지식정보가 올바르고 객관적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가공의 꾸민 이야기나 상투적인 문구를 응호하여서는 안된다.

2장 9조 상업적인 지원과 보증

박물관의 정책상, 상업체나 기업체로부터의 혹은 외부의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다른 보조를 얻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과 지원자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합의하여 정의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상업적 지원과 보증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박물관은 박물관의 기준과 목적 이 이러한 관계에 의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장 10조 박물관 매점과 상업활동

박물관의 매점과 다른 어떠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선전은 명백한 그 지침을 따라야 하며 박물관의 소장품과 기본적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이를 소장품의 질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된다.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선택된 상업적 복사품인 레프리카(복제품)의 제작과 판매의 경우에, 모든 상업상의 기획은 박물관의 통합성이나 소장품 원본의 본질적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물들의 가치가 영구히 어떠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복제품의 제작에 있어서 정확성과 고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이 기울여져야만 한다. 매매하는 모든 물품들은 금전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져야만 하고 모든 국내 해당 법규를 따라야만 한다.

2장 11조 법적인 의무

박물관 행정기구는 박물관이 국내법, 지역이나 지방법, 국제법, 조약 등에 따라서 박물관의 소장품이나 시설의 모든 면에서 법적으로 한정된 신탁권이나 조건에 대하여 절대적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장) 박물관 소장품의 취득

3장 1조 수집 정책

모든 박물관 당국은 그 소장품의 수집 정책에 대하여 성문화된 진술서를 마련하고 간행하여야 하고, 이 정책은 수시로, 또는 최소한 5년마다 한번씩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집품은 박물관의 활동과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효하고 확실한 법적 명목에 따라야 한다. 취득에 관한 한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도 양도증이나 다른 문서에 명백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박물관은, 예외적 몇몇 상황을 제외하곤, 박물관이 적절한 방식으로 목록화하고, 보존, 보관 혹은 전시하기 어려운 듯한 물품은 수집해서는 안된다. 박물관의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명문화된 정책에 어긋나는 취득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박물관 자체의 행정기구는 국가적이거나 다른 문화적 유산, 그리고 다른 박물관의 특별한 관심거리 등의 고려 중인 대상 유물의 중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라야 한다.

3장 2조 부정 물품의 취득

대중이나 개인 콜렉션을 위한 물품의 불법거래는 역사유적, 지방민속문화, 국내나 국제수준의 절도행위를 조장시키고 자연의 식물상과 동물상을 위태롭게 하며 국가적, 국제적인 세습 자산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다. 박물관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그리고 자주 파괴적인 물품의 취득과 그에 따른 거래시장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박물관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그 불법 거래를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이 아주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박물관은 행정기구와 책임간부가 박물관이 문제의 물품이나 표본에 분명한 명분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 기증, 유증, 혹은 교환 등에 의한 어떠한 물품도 획득할 수 없으며, 특히 그런 물건의 원산국가와 그 박물관이 속한 국가를 포함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속해 있는 어떠한 중개국가로부터도 수출되거나 구입될 수 없는 것이다.

생물학적, 지리학적 유물에 관한 한, 박물관은 법적 혹은 행정당국의 동의없이 박물관이 속한 국가나 어떤 다른 나라의 국내, 국제적 야생동식물 보호나 자연사 보호법령이나 약정에 위배되는 수집, 매입, 혹은 양도된 어떠한 표본을 어떤 직·간접수단에 의해서도 결코 획득해서는 안된다.

발굴된 유품에 관하여서는, 위에 언급된 안전지침에 더하여서, 발굴품의 발견이 고대 기념물이나 고고학적 유적지에 대한 최근의 비파악적, 국제적 파괴나 손상에 관계되거나, 토지 소유자나 법적, 행정적 원소유당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행정기구나 책임자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박물관이 매입으로 그런 유물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전시나 다른 목적으로의 대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위에서 설명된 4개의 구문에서와 같은 척결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장 3조 아외조사와 수집

박물관은 세계 자연사계, 고고학적 민족지적 자원과 역사적, 미술적 자원의 소멸을 중지시키는데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각 박물관은 국가적 국제적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노력의 정신과 의도에 합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박물관 종사자들에 의한 야외조사, 수집, 그리고 발굴에 있어서는 복잡하고도, 비판적인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야외연구나 야외수집을 위한 모든 계획의 수립에서는 제시된 연구활동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련 박물관이나 당국 또는 학술단체가 학술적, 과학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가를 확인하는 사전 조사와 자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어떠한 야외조사 계획에서도 표본과 자료의 취득에 있어서는 모든 참가자의 합법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비도덕적, 불법적, 파괴적 관행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거부되어야만 한다.

3장 4조 수집정책에 있어서 박물관 상호간의 협동

각 박물관은 박물관들간의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수집정책이나 관심 분야에 대하여는 서로 협동과 상의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보통, 특수분야를 한정 규정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해관계상의 갈

등이 제기될 수 있는 특수한 수집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만 한다.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의 인정된 수집영역의 범위를 존중하여야만 하고, 특별한 지역적 관련을 가진 물건이나 다른 박물관의 수집 영역에 속한 특정한 지방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물건을 통고없이 취득해서는 안된다.

3장 5조 조건부 취득과 다른 특수 요인들

증여, 유증 그리고 대여는 박물관의 명문화된 수집정책과 전시정책에 부합될 때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조건부 제안의 경우, 박물관과 그 대중의 장기적 이해관계에 위배되는 조건은 거부되어야만 한다.

3장 6조 박물관에의 대여

소장품을 개별적으로 대여해온다든가 대여전시회를 여는 것은 박물관과 그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3장 1조에서 3장 5조에 언급된 윤리적 원칙은 제시된 대여품과 대여전시의 영구수집 항목들로서의 승인이나 거부에 관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여는 그것들이 효과적인 교육적, 과학적 혹은 학문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전시될 수도 없는 것이다.

3장 7조 이해관계의 갈등

박물관의 수집정책과 그 규정에는 이사나 행정기구의 다른 구성원, 혹은 박물관 직원 등과 같은 어떤 개인도 박물관의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혹은 그녀의 지위로써 얻어진 특권적인 지식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든지 물품을 가지고 박물관과 경쟁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욕구와 박물관의 우선적인 요구사항과의 이해관계상의 갈등을 증진시킬 것이다. 행정기구의 직원, 중요요원 혹은 이들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들로부터의 매매나 면세조치된 증여품의 처리에 관한 어떤 제안에 대하여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장) 수집품의 처분

4장 1조 수집품의 영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근거

거의 모든 종류의 박물관의 중요기능은 물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후손을 위해 보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식적 명목이 붙은 표본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근거가 항상 있어야 한다. 기증, 교환, 매매 혹은 파괴 등 어느 것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처분도 높은 식견의 학예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법적인 충고가 취해진 다음에야 행정기구에 의해서 용인되어야 한다.

적어도 그들의 소장품의 일부를 대용해야만 한다고(즉, 대체와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여기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같이 살아 있는 표본을 전시하는 기관과 박물관들, 어떤 가르치는 교육적인 박물관들, 즉 생물이나 움직이는 물건을 취급하는 박물관들 같은 특수화된 종류의 기관인 경우

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기관의 활동이 연구, 전시, 사용되는 실지 대상물의 오랜기간 생존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분명하고도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

4장 2조 법적인 처분권

박물관 소장품의 보존과 항구성에 관한 법규와 그 소장품 중의 처분항목에 대한 박물관의 구속력은 국가에 따라, 또 한 국가내에서도 박물관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한 변질에 의해 아주 많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종류도 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명백한 법규상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

박물관이 처분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처분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요구사항과 절차에 완벽히 따라야만 한다. 법적 처분권이 있을 때에도 박물관은 취득한 물품의 처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의 재정적인 도움(예를 들면 박물관 협회 조직의 후원회나 개인기부자로부터의 공적인 혹은 사적인 보조금, 기부 등의)을 얻고 있는 곳에서는 처분에 대해서는 원래 구입에 관계했던 모든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래의 취득이 위탁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거나 박물관에 손해가 되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고 증명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만 한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물관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서만이 그런 규제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4장 3조 처분 정책과 절차

박물관이 물품에 대한 필요한 법적 처분권을 가진 곳에서는 소장품 중의 해당물품의 처분이나 판매결정은 신중한 고려를 거친 후에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물품은 우선적으로, 일반 경매나 다른 방법에 의해 매매되기 전에 다른 박물관과의 교환, 기증 혹은 사적인 매매협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너무나 상하거나 변질되어 복원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에 표본이나 미술품의 교환, 매매, 혹은 파괴 등의 여하한 방법에 의한 처분결정은 박물관 행정기구의 책임이며, 수집담당 학예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결정과 보존처리나 양도에 관하여 관련된 대상물에 취해진 합당한 조치와 가능한 경우엔 사진기록을 포함한 관련물품에 관한 문서목록은 완전하게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행정기구의 직원, 중요요원, 그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은 누구도 소장에서 처분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 중의 누구도 박물관 소장품 중의 물품을 다른 여하한 방법으로도, 심지어 일시적으로도, 어떤 개인 수장이나 어떤 종류의 개인용도로서 전용하여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4장 4조 문화유산의 반환과 배상

만일 박물관이 수출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불법수입, 수출, 그리고 문화유산의 소유권 양도를 막고 금지하는 Unesco의 협약(1970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물품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리고

원래 소유국가가 국가적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증거를 제시하고 그 물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박물관은, 만약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원 소유국에 물품을 반환함에 있어서 협조적인 조치를 책임있게 취해야만 한다.

원래 소유국에의 문화유산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정부차원이나 정치적인 차원의 행동에 우선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원리에 입각한 편견없는 넓은 마음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준비하여야만 한다. 박물관 자료와 박물관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유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박물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쌍방이나 다각적인 협동방안을 진전시키는 가능성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박물관은 또한 무력갈등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정(헤이그협정, 1954년)의 조항을 완전히 존중하고 그 협정을 지지하여, 어떤 정복국가로부터의 문화유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것으로 하고 구매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불법으로 수출되거나 불법으로 옮겨진 것들일 것이다.

4 장 5 조 소장품의 처분에 대한 수익

표본이나 미술품의 처분으로 행정기구에 들어온 어떠한 수익은 박물관 소장품의 추가구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III. 직업적인 행위

(5 장) 일반적 원칙

5 장 1 조 박물관 전문직원의 윤리적 의무

공립이거나 사립이거나 간에 박물관에 고용되는 것은 상당한 책임을 가지는 공공의 신임을 뜻한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박물관 고용인은 고도의 객관적 기준과 일치하는 가장 엄중한 윤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직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전문직 요원에게 꼭 필요한 요소는 권리와 의무 모두에 내포된 함축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분야의 직업인의 행동도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기본적, 도덕적 행위에 의해 보통 제한을 받지만, 모든 직책은 때때로 안내지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무, 책임, 기회와 같은 원칙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 전문직은 두가지 지시된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로, 박물관은 공공의 신임의 대상이며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봉사의 질에 따라 그 가치평가가 직접적으로 비례된다는 것이며, 둘째로 지적 능력과 전문지식은 그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에 의해 고양되고 고무되어야만 것이다.

박물관장과 다른 전문직원은 일차적으로 전문적이고 학문적 면에서 그 박물관에 충실히 해야 하고 항상 박물관의 공인된 정책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관장이나 박물관의 중요직원들은 ICOM의 윤리강령의 조항이나 박물관 윤리에 관한 어떤 국가적, 지역적 규정이나 정책을 잘 알고 이에 준하여 박

물관 행정기구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을 따르도록 종용하여야 한다. 또한 박물관 전문직원은 위임권을 가진 행정기구의 기능이 언제 통용되든간에 박물관 윤리에 관한 성문규정과 ICOM의 규정에 완벽히 따라야만 한다.

5장 2조 개인적 행위

전문직은 소속 박물관과 그 동료들에 대하여도 마땅히 충성심을 가지면서, 근본적 윤리원칙과 전체적인 직업관에도 궁극적으로 충실히 해야 한다.

어떠한 전문직에 대한 응시지원의 모든 관련사항은 솔직하고도 은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지명된 사람은 박물관 업무가 보통 경우 상근직임을 알아야 한다. 고용조건이 외부에서의 다른 고용이나 사업적 이해관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장과 다른 고위직은 다른 유급 고용직을 계약하거나 박물관의 행정기구의 동의없이는 외부의 업무를 허락해서는 안된다. 그들 직책의 사임이 제의될 경우 전문직원과 무엇보다도 관장은 당시 박물관의 요구사항을 조심성있게 검토하여야만 한다. 최근 새로운 계약을 수락하고자 하는 전문직업인들은 외부의 새 업무를 신청하기 전에 현 직책에 대한 적업적 결정사항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장 3조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개 전문직원들은 직업적 전문적 책임에 양립하는 개인적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대중의 눈으로 보기에는 박물관 직원의 개인적 사업이나 전문적인 이해관계는 제안 후 거부되었을 때에도, 그 기관이나 다른 공적 단체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에 의한 어떠한 박물관 관계활동도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 탓으로 여겨진다. 전문적인은 사실 개인적 동기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외부인에 의해 해석된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박물관 고용인과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선물이나 호의, 차용이나 다른 분배품 또 박물관에서의 그들의 일부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는 가치있는 물품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아래 8장 4조 참조).

(6 장) 소장품에 대한 개인적 책임

6장 1조 박물관 소장품의 취득

관장과 전문직원은 박물관의 행정기구에 의해 채택되어, 그 후에 다시 검토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적절히 개정된 명문화된 수집정책을 확고히 하는 가능한 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한다. 행정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개정된 이 정책은 취득에 관계된 모든 직업적 결정과 재추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대중으로부터의 박물관 소장품의 취득에 관한 교섭은 매매자나 기증자에게 양심적이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물품도 박물관이 그것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박물관에 이익이 되고 기증자, 소유자나 전소유자에게 손해가 되게 고의적으로 잘못 감정되거나 가격이 정해져서는 안되며, 부당하게 소장하기 위해 고의적인 의도로 대여를 받아들이거나 이를 계속 보유해서는 안된다.

6장 2조 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에 의해 일시적이나 영구히 취득된 모든 물건들은 그 기원, 감정, 상태와 처리 등을 알 수 있도록 바르고 완전하게 기록, 문서화되어야 한다. 박물관이 취득한 모든 물건은 바르게 보존 관리되고 보호되고 계속 후원 유지되어야 한다.

수송상의 도난이나 손상, 물품취급시의 우발적인 손상과, 전시나 작업시 또는 수장지역에서의 도난 등에 대비한 보호조치로서 가능한 최대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심스런 주의가 요청된다. 통상 보험에 들도록 국가적, 지역적 정책으로 권장하는 경우엔, 특히, 박물관이 소유하지 않았지만 현재 그 책임하에 있는 수송중인 물품과 대여품 등일 경우 박물관 요원은 보험의 조항이 적절한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만 한다.

박물관 직원은 훈련자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 그들이 소장품의 관리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하게 감독되거나, 올바른 지식과 기술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학예적인 보존관리상의 책임이나 다른 전문적 책임을 위임해서는 안된다. 또한 관리하에 있는 소장 물품의 안전 확인에 있어서 어떤 특정 박물관이나 부서의 전문인으로서는 불충분할 경우에는 박물관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다른 전문적 동료들과 반드시 협의해야만 한다.

6장 3조 소장품의 보존관리와 복원

박물관 전문직의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임무의 하나는 전문직과 고용기관이 책임지는 개개물품과 기존 소장품, 새로 취득한 소장품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보존관리를 취하는 것이다, 소장품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현재의 지식과 자원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흡족하고도 안전한 조건하에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도로 이상적이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에 있어서 박물관 표본과 미술품의 알려진 자연적이나 인공적인 변질원인에 대한 적절한 환경보호장치 설비를 포함하는 예방적 보존관리방법과 기술의 모든 새로운 지식이 이용되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발생가능한 분실이나 손상된 표본, 미술품의 부분적 복원과 대체의 정도에 대한 결정은 종종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학예관과 보존관리관이나 복원자를 포함하여 해당물품에 대하여 전문적 책임을 지닌 모든 사람들간의 적절한 협동이 필요하며, 한 개인이나 다른 어떤 개인에 의해서도 홀로 독단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작품에 대한 보존관리와 복원에 관련된 윤리적 논쟁점은 그 자체가 중요 연구 과제로서, 이 분야에 특별한 책임을 지닌 관장, 학예관, 보존관리관 또는 복원자는 그들이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과 보존관리관, 복원자의 전문기구에¹⁾ 의해 채택된 자세한 윤리조항과 규정에 명시된 적절한 전문적 견해에 반드시 익숙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The Conservator-Restorer : A Definition of the Profession' ICOM News, Vol. 39. No. 1. 1986, pp. 5, 6.

6장 4조 소장품의 목록화

기존 소장품과 새로이 취득된 소장품에 대하여 박물관의 내부규정과 해당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록과 목록화는 직업상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특히 이러한 목록에는 개개유물의 유입경로에 관한 상세한 사항과 박물관에 수납된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목록 자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고 중요요원과 다른 선의의 사용인에 의한 손쉬운 수정도 취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6장 5조 소장품목의 처분

박물관 소장품의 어떠한 품목도, 이 강령의 기관 윤리항목인 위에 언급된 4장 1조에서 4장 4조에서 요약되어져 있는 윤리원칙과 박물관에서 채택된 세부규칙과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될 수 없다.

6장 6조 살아 있는 동물의 복지문제

박물관과 관련 기관들이 전시회나 연구목적으로 살아 있는 동물식구들을 다룰 때에는, 그려한 생물의 건강과 안전관리는 최대한의 윤리적 배려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동물과 그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쟁고를 위해 수의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박물관은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승인된, 직원과 방문객의 보호를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모든 직원은 세부사항에 있어 반드시 이 수칙을 따라야만 한다.

6장 7조 인간의 유골과 의미있는 의례용품

인간의 유골과 희생물에 대하여 수집하고 있거나 수집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박물관에서는 이를 안전하게 격납하고 학술기관의 고문서 수집품과 같이 조심스럽게 유지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불전전한 호기군이 아닌 자격있는 연구자나 교육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품에 대한 그 보관소와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인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와 특별한 윤리나 종교인 단체를 포함하는 다른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용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때때로 해석적인 전시에서는 인간유체와 다른 신중을 요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진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감정을 존중하면서 요청있게 이용되어야만 한다.

6장 8조 사적인 수집행위

박물관 직원이 개인 소장으로서 박물관이 수집하는 종류의 물건의 취득, 수집, 소유하는 그 자체는 비윤리적이 아니며 전문지식과 판단력을 고양시켜 주는 가치있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 전문직원이 그 소속 박물관이 수집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수집할 때에는 심각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어떤 박물관 전문직원도 물품의 취득이나 어떠한 개인적 수집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소속기관과 경쟁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이해관계상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극단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몇몇국가 또 많은 개개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직원은 어떠한 종류의 개인수집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규칙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한조치가 없는 곳에서도 개인수집품을 가진 박물관원은 약속상 그것에 대한 보고를 행정기구에 제출하고, 박물관의 수집정책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개인수집에 관계된 학예관과 행정기구 간의 어떠한 추후 합의사항도 양심적으로 지켜야만 한다(아래의 8장 4조 참조)

(7장) 대중에 대한 개인적인 사명

7장 1조 직업적 지지기준

박물관 직원들은 그들 직책에서와 같이 대중의 관심에 대한 책임된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들 직책의 영광과 가치를 시인하고 그 스스로 부과된 규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대중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전문적 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고, 박물관과 그 직책의 목표와 임무에 대한 대중의 더 나은 이해심을 높이기 위하여는 직책상의 목표와 희망으로서의 대중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알맞은 기회를 준비해야만 한다.

7장 2조 일반 대중과의 관계

박물관 직원은 대중을 항상 능숙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해야 하며, 특히 모든 편지와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물관원은 특별한 경우 비밀이 요구된, 대중과 전문연구가로부터의 연구조사문의에 대하여 개인 연구나 특수전문분야의 주제라 할지라도 적당한 조절하에 진실한 연구자들이 그들 관리하에 있는 어떠한 물품이나 서류를, 가능한 한, 완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모든 전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같이 연구 활동하여야 한다.

7장 3조 기밀보장

박물관원은 박물관의 안전 설비나 공무 중 방문한 어떠한 장소나 개인 수장품의 안전설비 장치에 관련된 정보와 같은 모든 기밀정보를 지켜야 한다. 또한 박물관에 확인조사를 위해 반입된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비밀이 지켜져야만 하는데 소유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권한없이, 그러한 물품에 대한 정보는 다른 박물관이나 충개업자나 어떤 다른 개인(도난가능성이나 불법취득, 양도된 재산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경찰이나 다른 당국에 협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더라도)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구두로 말해진 역사나 다른 개인적 물품에 관한 개인적 기밀을 존중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카메라나 녹음기나 구두의 인터뷰와 같은 기록장치를 사용하는 조사자는 그들의 자료를 보호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조사받는, 사진 찍히거나 인터뷰 당하는 개인은 그들이 원한다면 익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특별히 약속된 경우에는 존중되어야 하며, 반대로 분명한 양해가 없었을 때에도 조사자는 첫째로 정보제공자나 그의 사회단체에 해가 될 어떠한 정보도 누설되지 않을 것임을 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연구되는 주인공에게 카메라, 녹음기와 다른 사용된 기계들의 성능과 용도를 이해시키고, 그들은 그것들의 사용을 자유로이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8장) 동료와 직책에 대한 개인적인 사명

8장 1조 직업적 관계

박물관 전문인들 간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항상 예의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전해의 차이가 개인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반적 원칙하에서도, 박물관원들은 한 박물관이나 박물관들 또는 그 직책에 해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 제안이나 관행에 적절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다.

8장 2조 직업적인 협동

박물관 전문직원들은, 당연히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관계 분야의 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하고, 사심없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상, 경험상의 진전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박물관 업무에 속하는 전문활동에 관한 개별 훈련은 업무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필요할 때에는 동료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박물관 직원들은 그들의 감독하에 쥬니어스태프, 훈련자, 학생, 그리고 공식적이나 비공식적 전문적 훈련을 받고 있는 보조원들을 두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의 혜택을 베풀어 주고 그들에 대하여 주의깊게 배려하면서 박물관원들간의 관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박물관 직원들은 그들의 임무상 그가 소속된 박물관 내에서나 외부에서 전문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관계에 있다. 그들은 이러한 관계가 공손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타인에 대하여 효과적이고도 높은 수준으로 봉사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8장 3조 거래

박물관 직원은 소속 박물관이 수집한 물품과 관련이 있거나 그와 유사한 물품의(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매행위 등의) 어떠한 거래에도 참가해서는 안된다. 어떤 다른 박물관이 수집한 물품에 여하한 책임이라도 있는 박물관 직원에 의한 거래는, 고용박물관과 직접적인 갈등의 위협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소속 박물관의 행정기구나 임명된 고위직 관리는 이를 완전히 조사 검토한 후, 조건이나 조건없이 분명한 허가를 내렸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ICOM 규약의 14 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문화재 매매행위를 할 때에는 개인이나 기관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8장 4조 이해관계에 관한 다른 잠재적 갈등

일반적으로 박물관 직원들은 이해관계상의 갈등으로 해석되기 쉬운 모든 행위를 삼가야만 한다. 박물관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접촉의 덕분으로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는 충고나 상담역, 가르치거나 저술 또는 방송, 감정요청 등과 같은 기회가 자주 주어지게 된다. 개인적 고용조건이나 국가법으로 그런 활동이 허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동료들이나 고용당국 혹은 일반 대중의 눈에는 이해관계상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합법

적 고용조건이 신중하게 검토, 체결되어야 하며 어떤 잠재적 갈등이 야기되거나 암시되는 경우엔, 그 상황이 즉각 해당 상관이나 박물관 행정기구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의 잠정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고용조건이 어떠한 외부적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이해관계상의 갈등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에도, 그러한 외부의 이해관계는 공식적 업무나 책임을 바르게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배려해야 한다.

8장 5조 인증, 감정과 부정률품

박물관원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문직 동료들과 일반대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장된다(위의 7장 2조 참조).

그러나, 인증이나 감정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행해서는 안되며, 물품에 대한 화폐가치에 대한 견해는 다른 박물관이나 법적, 행정적 책임부서나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표명해야 한다.

박물관원들은 물품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취득, 양도, 수입이나 수출되었다고 의심되거나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을 인증하거나 또는 감정해 주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문화재나 자연품의 불법거래를 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박물관이나 박물관 직책상 매우 부도덕한 일임을 인식하여야만 한다.(위의 3장 2조 참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불법거래를 어떠한 형태로든, 적·간접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불법, 부정 양도나 수출입이라고 의심되거나 믿어지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8장 6조 비직업적 행위

모든 박물관원은 어떤 국가법이나 지방법, 그리고 관행에 위배되는 어떤 고용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항상 어떤 종류의 부적당한 행위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정당하거나 부당하게 추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피해야만 한다. 특히 어떤 박물관 직원도 박물관 소장품 중의 어떤 물품의 구입이나 처분에 관한 부정한 유인이 되는 어느 상인이나 경매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선물, 호의 또는 여하한 형태의 보상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또한, 어떠한 부정행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는, 박물관원은 어떤 특정 상인, 경매인, 또는 다른 사람을 대중회원에게 소개해서는 안되고, 전문인으로서 또는 소속 박물관과 직업적 연관이 있는 특정 상인으로부터의 개인적 구매상의 어떠한 ‘특가’나 할인혜택도 공식적으로 수락해서는 안된다.